

해 양 수 산 부

훈계 · 시정 요구

제 목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사천시, 고성군

관 련 자 사천시 ○○○○과

지방○○○○주사보 ○○○

사천시 ○○○○과

지방○○○○주사 ○○○

내 용

지방○○○○주사보 ○○○은 2013. 7. 15.부터 2015. 1. 2.까지, 지방○○○○주사 ○○○은 2014. 1. 2.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사천시 ○○○○과에서 근무하면서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업무를 담당하였다.

정부주도의 수산자원관리 한계에서 벗어나 수산자원의 이용 주체인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토록 하여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 체계 구축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어업경영을 개선하며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실행한 어업인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사천시 및 고성군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총 20개소 777명 및 17개소 651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표 1]과 같이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을 각각 추진하였다.

[표 1]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추진 현황

시·군	연도	사업비백만원)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사천시	계	987,540	458,500	366,800	162,240	
	2013	399,680	192,500	154,000	53,180	○○○○공동체 등 6개소
	2014	243,497	104,000	83,200	56,297	○○○○공동체 등 4개소
	2015	344,363	162,000	129,600	52,763	○○○○공동체 등 6개소
고성군	계	816,846	401,000	320,800	95,046	
	2013	342,576	164,000	131,200	47,376	○○○○공동체 등 5개소
	2014	394,270	197,000	157,600	39,670	○○○○공동체 등 6개소
	2015	80,000	40,000	32,000	8,000	○○○○○○공동체

1. 부적정한 사업계획 심의 없이 확정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해수부 훈령)」(이하 “자율관리어업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르면 공동체는 사업계획 수립 시 자체 규약에 의거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수 어업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사업을 우선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집행주체(시·도 또는 시·군)는 육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체가 수립한 사업계획서가 육성사업비에 의한 사업으로 적절한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육성사업비 사전심의위원회²⁰⁴⁾(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고, 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 사업 계획서의 사업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거나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자율관리어업 관리규정」 제25조에 따르면 육성사업비는 공동체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공동작업장, 어업용 창고, 가공처리시설, 사료저장시설, 공동판매장 등 기타 수산자원 보호와 공동체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또는 사업에 사용되어야 하며, 어선어업 공동체에 한해 어선 안전을 위한 설비 및 장비 구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어획강도를 높일 수 있는 설비

204) 구성(5인 이내) : 시·군 담당과장(위원장), 소속공무원, 연합회장, 수협조합장, 전문가

및 장비는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사천시 ○○○○과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가 육성사업비에 의한 사업으로 적절한가를 판단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 사업 계획서의 사업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거나 보완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천시 ○○○○과는 2013년, 2014년 및 2015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대상으로 선정된 자율관리공동체가 제출한 내역에 자율관리어업 관리규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은 어획강도를 높일 수 있는 어군탐지기가 포함되었음에도 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심의 없이 부적정하게 사업계획 확정 및 교부결정하였다.

[표 2] 사천시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중 부적합 내역사업 현황

연도	공동체명	사업비(천원)				부적합 사업내용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2013	○○○○○○○○○○○○	45,622	20,000	16,000	9,622	어군탐지기 2대 5,580천원
	○○○○○○○○○○○○	29,650	12,500	10,000	7,150	어군탐지기 2대 5,580천원
	○○○○○○○○○○○○	82,520	40,000	32,000	10,520	어군탐지기 2대 5,580천원
2014	○○○○○○○○○○○○	40,466	20,000	16,000	4,466	어군탐지기 4대 14,990천원
	○○○○○○○○○○○○	48,139	20,000	16,000	12,139	어군탐지기 1대 4,100천원
	○○○○○○○○○○○○	79,155.5	32,000	25,600	21,555.5	어군탐지기 3대 8,300천원
	○○○○○○○○○○	75,736	32,000	25,600	18,136	어군탐지기 3대 8,300천원
2015	○○○○○○○○○○	83,218	40,000	32,000	11,218	어군탐지기 1대 2,100천원
	○○○○○○○○○○	71,153	32,000	25,600	13,553	어군탐지기 5대 10,500천원
	○○○○○○○○○○	44,750	20,000	16,000	8,750	어군탐지기 4대 19,600천원
	○○○○○○○○○○	41,800	20,000	16,000	5,800	어군탐지기 2대 10,800천원

2. 부가가치세 환급금 정산 소홀

「조세특례 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농민, 임업에 종사하

는 자와 어민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²⁰⁵⁾으로 정하는 있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등에게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제16조의2에 따르면 시·군은 보조사업 완료 후 정산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업집행지침에서 재투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사천시 및 고성군은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을 완료한 후 정산시 보조금 집행 사업비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사업비에서 공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환수하여야 할 환급금이 있으면 국가 등에 반납하여야 한다.

그러나 [표 3]과 같이 사천시는 2013년, 2014년 및 2015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으로부터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6,488천원을, 고성군은 2013년 및 2014년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6,074천원을 공제하고 정산하여야 하나, 사업비에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공제하지 않고 사업비를 정산하였다.

205)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임·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별표 6> 어업용기자재

- 양어장 필름, 양어장용 파이프, 어상자, 와이어로프, 자동조타기, 어업용 발전기, 구멍 부기·등의 등 29종류

[표 3] 부가가치세 환급금 미환수 내역

시·군	연도	공동체명	환급 대상 어업용 기자재	사업비 내역(원)				미환수액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사천시	계			79,299,000	39,649,500	31,719,600	7,929,900	6,488,100
	2013	○○○○○○○○○	자동조타기(1대)	4,532,000	2,266,000	1,812,800	453,200	370,800
	2014	○○○○○○○○○	자동조타기(1대)	3,421,000	1,710,500	1,368,400	342,100	279,900
		○○○○○○○○○	자동조타기(2대)	6,842,000	3,421,000	2,736,800	684,200	559,800
		○○○○○○○○○	자동조타기(2대)	3,960,000	1,980,000	1,584,000	396,000	324,000
		○○○○○○○○○	어업용발전기(5대)	8,800,000	4,400,000	3,520,000	880,000	720,000
		○○○○○○○○○	자동조타기(6대)	11,880,000	5,940,000	4,752,000	1,188,000	972,000
	2015	○○○○○○○○○	어업용발전기(4대)	7,040,000	3,520,000	2,816,000	704,000	576,000
		○○○○○○○○○	자동조타기(1대)	1,980,000	990,000	792,000	198,000	162,000
		○○○○○○○○○	자동조타기(1대)	3,938,000	1,969,000	1,575,200	393,800	322,200
		○○○○○○○○○	자동조타기(9대)	22,506,000	11,253,000	9,002,400	2,250,600	1,841,400
		○○○○○○○○○	자동조타기(1대)	4,400,000	2,200,000	1,760,000	440,000	360,000
고성군	계			74,238,400	37,119,200	29,695,360	7,423,840	6,074,050
	2013	○○○○○○○○○	구멍조끼(16벌)	3,678,400	1,839,200	1,471,360	367,840	300,960
		○○○○○○○	자동조타기(22개)	39,600,000	19,800,000	15,840,000	3,960,000	3,240,000
		○○○○○○○○○	자동조타기(4개)	7,200,000	3,600,000	2,880,000	720,000	589,090
	2014	○○○○○○○	자동조타기(9개)	17,820,000	8,910,000	7,128,000	1,782,000	1,458,000
		○○○○○○○○○	자동조타기(3개)	5,940,000	2,970,000	2,376,000	594,000	486,000

조치할 사항 사천시장은

[훈계] 위 관련자들을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사천시장, 고성군수는

[시정]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정산 시 공제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속히 환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